

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서윤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65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7월 13일

발 의 자 : 서윤기, 김동식, 박기재, 정진철,
김기대, 김제리, 봉양순, 임만균,
정재용, 임종국, 양민규, 이정인,
유정희, 박기열, 오현정, 전병주,
이상훈, 김화숙, 황인구, 장상기,
오중석, 최 선, 채인묵, 장인홍,
이태성, 추승우, 이동현, 전석기,
노식래, 노승재, 김경영, 김희걸,
권순선, 문병훈, 김수규, 김광수,
유 용, 송도호, 최영주, 문장길,
최정순, 홍성룡, 김경우 의원(43명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‘행상 또는 노점’을 ‘거리가게’로 함(안 제13조제2항제1호).
- 나. ‘유모차’를 ‘유아차’로 함(안 제13조제2항제2호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제1호 중 “행상 또는 노점”을 “거리가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유모차”를 “유아차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행위의 제한) ① (생 략)</p> <p>② 누구든지 서울로에서 시장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1. <u>행상 또는 노점</u>에 의한 상행위</p> <p>2. 관리차량, <u>유모차</u>, 휠체어 이외에 바퀴가 달린 차량의 통행</p>	<p>제13조(행위의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<u>거리가게</u>-----</p> <p>2. -----<u>유아차</u>-----</p> <p>-----</p>